

제3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2. 7. 12.(목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홍성규 부위원장
김충식 상임위원
신용섭 상임위원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- ① 성원보고
 - ② 국민의례
 - ③ 개회선언
 - 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 - 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⑥ 의결사항

가. **종합유선방송사업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에 관한 건** - JCN울산중앙방송(주)의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 주식 취득 - (2012-39-143)

- o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15조의2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의거, JCN울산중앙방송(주)의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최대주주 인가 신청 건에 대해 제1안과 같이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 및 인가하기로 의결함

< 변경승인 및 인가 조건 >

1. JCN울산중앙방송(주)는 변경승인 및 인가일 이후 3년간 기존 차입금 이외의 추가적인 차입(지급보증 및 자산담보 포함)을 하지 않아야 한다.
2. JCN울산중앙방송(주)는 변경승인 및 인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무건전성 제고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3. JCN울산중앙방송(주)는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가 변경승인 및 인가일 이후 3년 동안 차입(지급보증 및 자산담보 포함)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향후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4. JCN울산중앙방송(주)는 JCN울산중앙방송(주) 및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의 지역채널운영 계획 및 각종 시설투자계획과 이용자권익증진방안을 변경승인 및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JCN울산중앙방송(주) 및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가 제공하는 방송 및 통신서비스 품질이 본 주식소유 이전과 비교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5. JCN울산중앙방송(주)는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의 2011년 말 확정된 이익잉여금 규모를 감소시키지 않고, 2012년부터 매년 계획한 투자를 집행한 후 발생하는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.
6. JCN울산중앙방송(주)은 변경승인 및 인가일 이후 이뤄지는 차입금 및 전환상환우선주와 관련된 본계약 자료 일체를 계약 이후 즉시 제출하고,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계약에 대해 상환청구권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기타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7. 변경승인 및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제1,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거나 그 내용을 수정 적용할 수 있다.
8. JCN울산중앙방송(주)은 매년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 변경승인 및 인가조건 이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 (주)씨앤엠울산케이블티비의 주식 변동 내역 >

변경 전		변경 후	
(주)한국유선미디어	100.00%	JCN울산중앙방송(주)	100.00%
합계	100.00%	합계	100.00%

※ (주)한국유선미디어는 (주)씨앤엠의 100% 자회사

나.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건 - (2012-39-144)

- 김준상 미디어다양성추진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송법 제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에 대한 부수 인증 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(지정기관 및 기간)

지정기관	지정기간
사단법인 한국ABC협회	1년 (2012. 7. 20. ~ 2013. 7. 19.)

7] 보고사항

가.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에 관한 사항

- 위치정보법이 개정 공포(5.14)됨에 따라,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, 보관 절차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 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

- ① 피구조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112에 구조 요청한 경우, 피구조자의 개인위치 정보 제공 의사 확인 방법(안 제28조의2)
 - 긴급구조 상황 발생시 자신의 개인위치정보를 경찰관서가 확인하는 것에 대해, 사전에 경찰관서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를 통해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봄
 - 경찰관서 및 위치정보사업자는 이러한 사전 동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- ② 경찰관서의 개인위치정보 요청, 보관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30조의2)
 - 경찰관서에서 위치정보시스템 등(①의 사전 동의 정보시스템 포함)에 접속할 수 있는 자를 업무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함
 - 경찰관서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전자적으로 자동 기록·보존하되, 개인위치정보는 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 즉시 삭제하도록 함
 - 요청자, 요청일시 및 목적,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,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, 위치정보시스템 접속기록(위치정보 처리일시, 처리내역 등의 기록)
 - 구조를 요청한 자(피구조자 대신 다른 사람이 구조 요청한 경우에 한함)

③ 경찰관서와 위치정보사업자의 국회에 대한 보고(안 제30조의3)

- 경찰청장은 개인위치정보 요청 건수, 요청 대상 전화번호 및 요청 일시 목록을,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건수, 제공 대상 전화번호, 제공 일시 및 제공 기관 목록을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함

④ 기타 사항(안 제29조)

-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목록에 ☎112 추가

○ 향후 일정

- 관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: '12. 7월 ~ 8월
- 위원회 의결 : '12. 9월
-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: '12. 9월
- 차관·국무회의 : '12. 10월

나. 차세대 웹 표준(HTML5) 확산 추진계획(안)에 관한 사항

- 우리나라 웹의 비표준 환경 개선 및 인터넷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'차세대 웹 표준 (HTML5) 확산 추진계획(안)'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내용(정책방안)

① 웹 기반의 개방형 기술 개발 및 표준화

- (웹 기반 공인인증서 등 개발) 웹에서 '공인인증서', '안전결제' 등을 직접 불러올 수 있는 "웹 기반 전자서명 기능"을 개발하여, W3C 표준으로 반영함으로써 (~14년), ActiveX 설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없앴
- (국제 표준 활동 강화) W3C 표준 활동을 지원하고, 회원 참여 확대(W3C 회원사 비중 : 12년 2% -> 14년 5% -> 16년 6%)
- (보안 조치 강구) 차세대 웹 표준 (HTML5)의 자체적인 취약점 및 웹 사이트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(13년), 주요 사이트의 취약점 점검 지원 (14년)

② 차세대 웹 표준 (HTML5) 전환 및 수요 확산

- (웹 사이트 전환 지원) 주요 공공기관 사이트 15개, 재정·기술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사이트 185개를 선정하여, 차세대 웹 표준 (HTML5)으로 전환하도록 지원 (12년, 구글 및 KISA를 통해 시범적으로 추진)

- (웹 표준 진단 도구 보급 등) 웹 사이트 자체적으로 차세대 웹 표준 (HTML5) 등, 표준 준수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진단 도구 (40종) 개발
- (시범사업) 웹 앱 유통 시스템, 통합 TV 웹 플랫폼, 모바일 광고 플랫폼 등을 구축하여, 선도 사이트로서 보급 (정부 및 민간間 매칭)

③ 인식 제고 및 제도 개선

- (공모전 및 캠페인) 우수한 웹 사이트 및 기업을 시상하는 ‘공모전 (매년 5~6개 시상)’, ‘개발자 경진대회’를 추진하고, 포털과 언론사 공동 으로 ‘바로 알기 캠페인’, 컨퍼런스 개최
- (표준 문서 한글 번역) 관련 표준 문서 20종 (총 40개中 비디오, 오디오 등 중요 문서 20개)을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
- (웹 개발 RFP 가이드라인 마련) 공공과 민간의 웹 서비스 발주時, 수주 기업이 차세대 웹 표준 (HTML5)을 준수하도록, 가이드라인 마련

④ 5년間 3천명의 전문 인력 양성

- (재직 인력 재교육) 웹 개발 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전문 강좌를 개설하되, 실무 기술 중심으로 단기 집중 교육 제공 (주말 및 야간 이용)
- (대학 고급인력 양성) 3~5개 특화 대학을 선정하여 기술개발과 연계한 석·박사 인력을 양성하고, 민간 전문가로부터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커뮤니티 및 동아리 활동 지원 (매년 10개, 각 1천만원)
- (취업 교육) 대학, 전문대학, 특성화고 등의 취업 예정자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기업 현장과 직결된 수요 지향적 교육 실시

⑤ 차세대 웹 표준 (HTML5) 산업 활성화

- (중소 벤처기업 육성) 글로벌 K-스타트업 (12년 30개팀),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(現 10개소)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고,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“HTML5 Investment Fair”를 정례적으로 추진
- (지원센터) 중소 벤처 ICT 기업에게 차세대 웹 표준 (HTML5) 관련 기술, 정보, 장비, 컨설팅 등을 제공해 주는 “지원센터” 설치
- (웹 앱 개발 지원) 콘텐츠, 서비스, S/W 등을 개발할 때 공통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모듈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(13년 10종, 14년 10종), 이통사와 협력 하여 중소기업의 웹 앱 개발 지원 (12년 10개)

Ⅷ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2. 7. 18(수).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1:15)